
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[안]

2023. 8.

동물복지환경정책관
(반려산업동물의료팀)

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(요약)

1.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□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·관심 증가로 관련 영업장도 빠르게 증가*

* ('16) 4.2 → ('18) 13.5 → ('20) 19.3 → ('22) 22.1천 개소(생산·판매업 비중 : 27.3%)

□ 지나친 반려동물 상품화, 불법영업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제도 강화

* ('08) 판매·장묘업 등록, ('12) 생산업 신고, ('18) 생산업 허가, 전사·미용·운송·위탁관리 등록

** ('23) 무허가·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·말소, 무허가 영업 처벌강화(징역2년/벌금2천),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, 거래내역 신고, CCTV 설치장소 구체화, 인력기준 강화(50마리/1인)

□ 하지만,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·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 지속

○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 구조에서 모견 학대 등 지속 발생하나, 개체 관리 및 점검·단속 인력 부족 등 한계* 지적

* 생산단계의 모견 개체수 파악이 안되고, 부모견 및 자견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어미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으며, 개체번호 부여·관리 방식 부재

○ 파양수요*를 악용한 번식영업장의 동물 학대 문제 사회적 이슈화

* 반려인의 약 22.1% 파양을 고려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
<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 사례 >

①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지는 반려동물(모견 등)을 학대시켜 폐사

*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 보도('23.4)

② 열악한 사육장에서 공장식 생산으로 모견 학대·폐사, 무허가 생산업자 경매 참여

* 330m² 미만 영업장에서 48마리 부모견이 63마리 강아지 생산(실태조사, '21.12)

* 무허가 생산업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, 경매 참여 사례 적발('23.7. 대전)

③ '보호비' 명목의 고액 동물 파양비 수령 후 학대·유기하는 번식영업 확산

* '보호소'를 사칭한 번식영업 펫숍에서 '파양동물 암매장(개 사체 119구)('23.5) 등

④ 유기동물 '보호소'를 표방하며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가의 품종견 구매 유도, 반려동물용품·병원·보험 끼워팔기 사례 등 피해 발생

* '안락사 없는 보호소' 가면 쓴채...파양견 두 번 울리는 신종 펫숍 (한국일보, '23.5.4)

⑤ SNS 등 활용, 개인 간 분양으로 위장한 음성적 동물판매 성행

* 유기동물 판매, 매매 계약서 미제공 등 사례가 서울시 등 지자체로 다수민원 접수

⑥ 불법 동물 카페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및 학대 발생

* 전시동물을 망치로 때려 폐사, 전시동물 다수 질병 감염 보도(SBS, '22.11.27)

2. 개선 방향 및 전략

비전

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

달성 목표

- ◇ 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: (도입) '24. → (등록완료) '26.
- ◇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: (시범) '24. → (구축·운영) '26.
- ◇ 번식영업 규제 마련 및 이행, 전시업 허가제 전환('24)

전략 및 과제

4대 전략

세부 추진 과제

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



- ①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- ② 생산-판매-양육 쉼단계 이력관리 추진
- ③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
- ④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로 전환 검토(중장기)

2. 보호소 위장 번식영업 근절



- ①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- ② 보호시설 영리 행위 금지 명확화
- ③ 민간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

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

- ① 노화·질병 동물 유기 등 처벌 강화
- ②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- ③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



- ① 중양·지자체·단체 합동점검 강화
- ②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- ③ 파양 상담 및 입양 전 교육 강화

[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]

	현재	미래 모습
번식 (생산)	· 생산업 부모견 미등록 · 생산업 모견 숫자 파악 불가 ·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곤란	·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 · 생산업 전체 모견 숫자 파악 · 모견 출산 휴식기, 노화 동물 학대 확인·적발 가능
판매 (경매)	· 영업·비영업 공간 불명확 · 무허가 생산업 경매 확인 곤란 · 건강 등 정보 제공 미흡 · 번식-경매-펫숍 판매 구조	· 영업·비영업 공간 구분 ·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 차단 · 건강상태 등 정보 제공 강화 ·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 검토(중장기)
전시	· 동물전시업 등록제 · 동물 관리기준 불명확	· 동물전시업 허가제 전환 · 전시동물 관리기준 마련
분양 (구입)	· 반려인이 조건없이 구입 * 높은 파양 수요(약 22%) · 불법 가정 분양 방지	·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* 반려동물 에티켓, 행동지도 등 ·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 → 불법 가정분양 퇴출
파양	·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소 (파양비 지급후 파양) · 일부 동물 유기	· 보호소 영업행위 금지 · 민간동물보호 시설 파양 수용 * 파양 기부금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· 불가피한 사유 지자체 인수 * 장기요양, 군복무, 재해 등
이력 관리	· 총량단위 관리 *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· 불법 거래 확인 곤란	· 개체단위 이력 관리 * 모견 등록번호 + 자견 개체번호 연결 →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* 「생산 - 판매 - 양육사망」 이력 관리 · 무허가공장식 번식업 관리·퇴출

3. 세부 추진과제

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

①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
-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*에 동물생산업의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 번식 목적의 개를 포함('23.下 실태조사** → '24. 개정) 시행령

* (예시) 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

** 모견·종견 사육 두수, 개체관리카드 관리현황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현황 등 사육현황

- 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,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검토

② 생산-판매-양육 순단계 반려동물 이력관리 추진

-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함께, 자견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이력 관리체계 구축('23.下 연구용역* → '24. 예산확보 → '25. 시스템 구축)

* 동물등록 개편(자견과 모견 번호 연결, 암수 구분 등),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데이터 등 검토

- 반려동물 개인분양(자견) 시에도 모견 등록번호를 연계·등록 추진

③ 영업자 정보 제공 투명성 강화

- 온라인을 통한 광고·영업 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*을 준수 하도록 하여 과대광고 제한, 대면판매 명확화('24) 시행규칙

*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, 표시·광고 관련 규정 준수 등

- 동물병원·수의사 작성 예방접종 및 건강 확인서 소비자 제공 의무화, 영업 관련 실적 증빙자료 거짓·허위 기재 금지('24) 시행규칙

* 현행 규정에는 영업실적 증빙자료의 거짓·허위 기재·제출 시 제재 조항 부재

④ (중장기)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 전환

- 펫숍·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영국 등 사례, 경매를 허용 하는 스페인·일본 등 사례 비교 분석·시사점 도출('23.下) 및 공론화

* 「동물복지법」 제정과 연계, 공론화 및 제도화 검토
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

①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
- 영업자 준수사항(시설기준)에 다른 용도의 시설 간 '분리'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* 및 보호시설로 위장 판매 시 처벌 시행규칙

* '연결된 출입구가 없고, 시야가 차단된 벽이나 층으로 구분'으로 명확화

②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

-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영리 목적의 운영·홍보 제한('24.) 법

* (개정안, 예시) 누구든지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아니된다.

-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안 발의 등 추진

③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

-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선진국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등 운영 사례 조사('23.下)

- 파양 시 기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('24.) 시행규칙

* 민간동물보호시설 등 기부금·후원금 처리 및 회계 내역 공개 등

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① 노화·질병 동물관리 및 학대 처벌 강화

- 생산업 사육 동물의 질병·상해 시 수의사 검진 및 기록 관리 의무화('23.下~) 시행규칙

* 질병·상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검진 후 그 검진 내역을 기재

- 노화·질병 동물의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시 처벌 규정 강화('24.) 법

* (현행) 과태료 3백만원(영업정지 3개월) → (개정) 벌금 3백만원(영업허가 취소)

②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
- 생산(사육실, 분만실 및 격리실)·수입(사육실, 격리실)·동물전시업(전시실, 휴식실)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 대상 업종* 확대('24.) 시행령

* (현행) 판매·장묘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5종 → (개정) 생산·수입·전시업 등 3종 추가

③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- 현행 등록제인 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('24)하고, 사육동물 관리기준* 구체화 및 제도화 추진(법안발의 '23.下, 기준 제도화 '24) 법 시행규칙

* 간식 제한, 시설분리, 자연채광, 바닥재 기준, 중성화 의무 등 검토, 수용 동물 수 및 반려동물 외 다른 동물의 전시·사육 제한, 교육·실습 동물 관리기준 검토 병행

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

① 중앙·지자체·민간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

- 영업자 기획점검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고, 주요 점검사항 해설서(현장조사, 경찰공조·법령해석 등) 및 체크리스트 마련·배포('24.)
- 지자체 동물복지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 노력* 지속
 - * 인력확보·재배치를 위한 지자체 배포자료(행안부) '동물복지인력 확충' 포함('22.11. 기조치)
- 명예동물보호관(동물보호단체 등) 역할 강화* 및 포상 확대('24)
 - 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계도·홍보 → (개선안) 영업자 공동 점검 등

②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
- 동물장묘업 교육과정 개설('23.下), 지자체 연계* 교육과정 발굴('24.)
 - *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주관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일정 시간 인정 등
- 고령 영업자 대상 교육, 업종별 교육 등 수요기반 현장 교육 추진('24.)

③ 파양상담 및 입양전 교육 강화

- 선진국의 파양동물 수용 시 파양상담 채널 및 사례조사('23.下)
- 예비 반려인 등 대상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검토 병행('24.)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반려동물영업 현황·제도 및 문제점	2
III. 해외 사례 및 시사점	9
IV. 개선 방향 및 전략	13
V. 세부 추진 계획	15
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	16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	20
3. 불법영업·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	22
4.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	23
VI. 향후 일정	26

I. 추진 배경

□ 반려동물 양육·관심 증가로 관련 영업장도 빠르게 증가 추세

-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·수요 증가로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·전시업 및 각종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이 과거 10년간 약 10배(연평균 36%) 증가*
* ('12) 2.1 → ('14) 2.7 → ('16) 4.2 → ('18) 13.5 → ('20) 19.3 → ('22) 22.1천 개소
(「동물보호법」개정('17.3.)으로 '18년부터 4개 업종(미용·운송·전시·위탁관리업) 추가)
- 특히,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업은 전체 영업의 27.3%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최근 미용업 등 서비스업도 증가 추세
* 생산·판매업 비중(생산·판매업/전체 반려동물 영업) : 27.3%(6.0천/22.1천 개소)

□ 지나친 반려동물 상품화로 인한 문제 개선 위해 관리 제도 강화

- 2008년 등록제 도입 이후 생산·판매·수입·장묘업 허가제 전환
* ('08) 동물 판매업·장묘업 등록제, ('12) 생산업 신고제, ('18) 생산업 허가제, 수입·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록제, ('23) 판매·수입·장묘업 허가제
-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* 및 처벌수준**도 단계적으로 상향
* ('23.4) 12개월 미만 개·고양이의 교배·출산 및 2개월 미만 개·고양이의 판매 금지
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·폐기 등의 목적으로 거래 금지
** (종전) 무허가·무등록 영업 시 : 5백만원 이하의 벌금
(강화) 무허가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무등록 : 1년/1천만원

□ 하지만,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·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 지속

- 소위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의 반려동물 공급구조에서 발생하는 모견 학대*, 전시장 동물들에 대한 학대 등 지속 발생
* ('23.3.5) 번식·경매장에서 개 1,200 마리를 만 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·아사 사건 발생
- 파양수요*를 악용한 변칙영업 증가 및 학대 문제 사회적 이슈화**
* 반려인의 약 22.1% 파양을 고려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** ('23.5.28) '보호소'를 사칭한 변칙영업 펫숍에서 '파양동물 암매장' 정황 확인

 **국내 실태와 선진국 제도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관리 방향을 설정하고, 세부 추진 계획 마련**

II. 반려동물영업의 현황 · 제도 및 문제점

1 반려동물영업 현황

□ 총 8개 영업 분야 2만 2천개소가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음

- 「동물보호법」상 생산·판매·장묘업 등 총 8개의 영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 2만 2천개소*의 영업장이 허가·등록됨('22)

* 허가·등록 현황 : ('19) 17,155 → ('20) 19,285 → ('21) 20,685 → ('22) 22,076

- 업종별로는 미용업(39.7%), 위탁관리업(23.2%), 판매업(19.4%) 순

* (허가) 생산업(2,086), 수입업(125), 판매업(3,944), 장묘업(68)
(등록) 전시업(638), 위탁업(5,034), 미용업(8,868), 운송업(1,313)

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지속 증가

- 미용 및 위탁관리, 운송업 등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서 허가·등록 영업이 증가, 특히 운송업 등 서비스업 증가세가 두드러짐
- 판매업, 전시업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

※ 반려동물 영업 현황

* 단위 : 개소, %

구분	2020	2021	2022	'22-'21(증가율)
생산업	1,952	2,019	2,086	67(+3.3)
판매업	4,159	4,010	3,944	▽66(▽1.6)
수입업	120	122	125	3(+2.5)
전시업	664	653	638	▽15(▽2.3)
미용업	7,271	8,222	8,868	646(+7.9)
위탁관리업	4,406	4,802	5,034	232(+4.8)
운송업	656	794	1,313	519(+65.4)
장묘업	57	63	68	5(+7.9)
합 계	19,285	20,685	22,076	1,391(+6.7)

- 관련 영업 증가로 '22년 종사자가 전년 대비 4.9%(1.2천명) 증가

* 종사자 수 현황 : ('20) 24,691 → ('21) 24,863 → ('22) 26,093 * 보호복지실태조사('22)

참고1

반려동물 영업 형태 및 입양경로

◇ 반려동물영업은 생산·판매·미용·훈련·장묘 등 직접 반려동물을 다루는 업종으로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총 8개의 영업 규정

* (허가) 생산업, 수입업, 판매업, 장묘업 / (등록) 전시업, 위탁업, 미용업, 운송업

<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구분>

구분	생산	판매·유통	양육	사후
기능	• 번식 • 사육	• 분양 • 수입	• 미용, 위탁보관, 운동, 전시, 교육·훈련	• 사체 처리 • 장례 서비스
업종	• 생산업	• 동물판매(경매)업 • 동물수입업	• 동물전시업 • 동물미용업 • 동물위탁관리업 • 동물운송업	• 동물장묘업

○ 다만, 동물진료는 기존의 수의사법에서 동물진료업을 별도로 규정(동물병원 신고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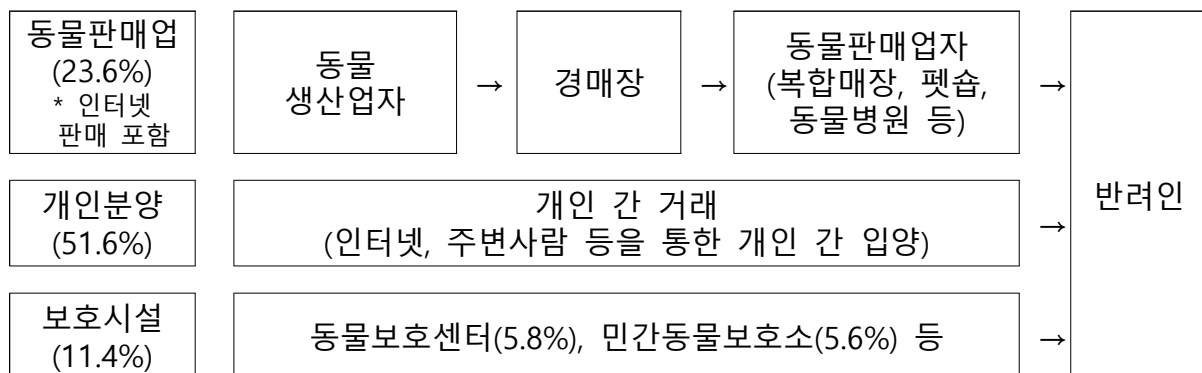
○ 이외에 반려동물 사료, 용품, 보험 등 반려동물을 직접 다루지 않고 반려동물의 생산·양육 등과 연관되는 산업분야가 있음

◇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주로 동물판매업자, 지인 등 개인, 동물보호센터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짐

○ 반려동물 입양의 약 24%가 동물판매업자에게서 구매,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은 11.4%에 불과

<반려동물 입양경로>

* 동물보호인식조사('22)



□ 반려동물 영업제도는 법 제정('91) 이후 총 4차례 대폭 강화

- 반려동물 영업제도 전부개정('08, '12, '23) 3회, 일부개정('18) 1회

※ 반려동물 영업제도 강화 주요 연혁

- ▶ ('08년) 동물판매업·장묘업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
- ▶ ('12년) 동물생산업 신고, 동물수입업 등록제 추가
- ▶ ('18년) 동물생산업 허가 전환, 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록제 추가
- ▶ ('23년) 수입업·판매업·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

- 반려동물 양육·관심 증가에 따라 생산·수입업 등을 제도 내로 편입·관리하고, 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서비스업도 추가

□ 특히,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·관리 규정 대폭 강화('23.4시행)

- 개정 법령('23.4월 시행)에서는 지자체 직권 말소·폐쇄 권한 부여 등 반려동물 영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규정 등 마련
-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제 전환, CCTV 설치 구체화 및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등 관리 규정 강화

※ 반려동물 영업 관리규정 강화 주요내용('23.4.)

- ▶ (법 제77조 직권말소)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 직권 말소 가능
- ▶ (법 제78조 영업자 준수사항) 사육·관리 인력 생산·판매·수입 50마리당 1명/ 전시·위탁 20마리당 1명, 모견 출산 후 10개월 이상 휴식 기간
- ▶ (법 제79조 등록신청) 반려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
- ▶ (법 제80조 거래내역 신고) 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
- ▶ (법 제85조 폐쇄) 무허가, 무등록 영업장 지자체 직권 폐쇄 가능
- ▶ (법 제87조 CCTV) 허가 및 등록 영업자 CCTV 장소 구체화
- ▶ (법 제97조 벌칙) 무허가영업(징역2년/벌금2천), 무등록영업(징역1년/벌금1천)
 - 생산업 12개월 미만 출산·교배 금지, 발정 유도 금지(과태료 5백만원)
 - 2개월령 미만 판매, 노화 동물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금지(과태료 3백만원)

◇ 불법영업 등에 대한 농식품부·지자체·동물단체 합동단속 중(‘23.3~12.)

- (합동점검) 동물복지 민감업종* 불법영업 집중 점검(반기 1회, 정례)

* 동물보호단체 제보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생산·판매·전시업 집중

- (기획점검) 무허가·무등록영업, 편법영업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* 동반 기획조사(수시)

* 동물보호명예감시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의료전문가, 경찰(특사경) 등 협조·동행 무허가·무등록 영업, 편법영업 실태·위법성 여부 등 특별 점검

- (기본점검) 신설·강화되는 시설·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·제도

* 지자체별 자율 점검계획 수립, 영업자 전수 점검 추진(연 1회 이상)

◇ 상반기(‘23.3~6) 총 8,162건 단속하여 고발·행정처분 등 251건 조치

- 동물학대, 무허가 동물생산·판매·장묘업 등 8건 적발하여 고발

※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·고발 사례

- ▶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동물장묘업체, 미용업체(경기 안산, 대구, 광주)
- ▶ 변경허가 사항 미신고 동물생산업체(경기 김포)
- ▶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동물판매업체(경기 이천)
- ▶ 허가받지 않고 영업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(경기 고양, 포천, 전북 진안)

- 시설·인력기준·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0건 행정처분*, 허가증 미제시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 193건 시정조치

* 사육설비 기준 미달(영업정지 15일), 동물 전달 방법 위반(과태료 40만원), 개체관리카드 미표기·영상처리기기 미보관(영업정지 7일) 등

※ 이와 별도로 동물학대 개 도살장 등 입건 조치 진행

* (경기 특사경) 동물학대(개 도살) 현장 적발하여 입건(6.2)

◇ 영업자 점검·단속 강화를 통해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나, 단속 불만 민원 및 과중한 업무로 담당 공무원 부담 증가

- 현장 점검 시 적발 사항에 대해 영업자 강한 불만* 제기

* 시설·인력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지적에 대해 납득하지 않음

- 영업 관리와 함께 다른 업무를 병행, 담당자 업무 피로도* 가중

* 일선 공무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동물복지 업무 기피(상당수가 1년내 휴직·이동)

□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공장식 번식을 통한 생산·판매 고착

-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으로 연결된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가치사슬이 동물경매장을 매개로 산업적으로 성장하여 고착되고 있음
 - * (경매 거래현황) 평균 1개소에서 연간 약 7천 마리(주 150마리), 거래액의 11% 수수료(매수·매도 양측 5.5%), 수수료 연간 2억 3천만 원(30만 원/1마리 낙찰 시)
 - ** 펫숍은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품종 강아지를 소비자에게 80~100만 원에 판매 경향
- 부모견 방치·학대, 상품성 낮은 동물 불법 처리* 등 문제 지속 발생
 - * (경기 양평) 동물번식판매업자가 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을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시켜 동물 학대로 기소(총 32명, 경찰청, '23.5.17)
- 생산업 모건의 출산 휴식기(10개월 이상), 번식력 없는 노화 동물 보호 등 생산단계 모건·종견 관리에 대한 현장 확인 곤란
 - * 생산단계의 모건 개체수 파악이 안되고, 부모견 및 자견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어미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으며, 개체번호 부여·관리 방식 부재

□ 보호소로 위장, 판매 또는 파양 수요를 활용한 변칙영업 확대

- 유기동물 '보호소'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 유인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, 허위·과장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분양을 유도

- ▶ D사 - 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나 위탁관리업, 동물판매업을 하는 영리업체로 허위·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·알선하여 동물 상품화 등 문제 초래
 - ▶ H사 - 무등록 판매업으로 적발되어 행정조치, 다른 사람 명의로 동물판매업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후 '보호소'를 표방한 변칙 영업행위 지속
- 동물판매업자가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는 변칙영업(소위 '신종펫샵')이 프랜차이즈화*로 확장
 - * 전국적으로 130개소,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 추정('23.5월 기준)
- 반려인으로부터 파양비 등 수령 후 불법 유기·폐기 사례* 적발
 - * (경기 여주)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다수 개 사체(119구) 발견, 신종 펫숍에서 피의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유기·폐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중('23.4~)

※ 반려동물 변칙영업 피해 유형 : (파양인) 파양동물 소식을 알 수 없음, 파양신청 철회 불수용, (입양인) 파양동물 입양 후 질병 확인, 파양동물로 유인 후 어린 개체 판매 등

□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, 무허가·무등록 영업, 과장 광고 등 지속

- 제도 강화와 단속에도 불구하고, 일부 반려동물 영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영업,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자행
 - * ('23.3. 경기도 합동점검)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불법 사육 적발
 - * ('23.7. 대전 경매장) 무허가 생산업소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, 경매 참여 사례 적발
- 서울 소재 동물카페(동물전시업) 내 학대사건 발생('22.9) 후 전수조사(서울, 82개소) 결과 영업장 내 동물관리 부실* 확인('22.12)
 - * 질병 감염 18개소, 높은 비만율(라쿤 38.7%, 개 22%, 고양이 17.9% 등), 안전장치 미흡(탈출 방지를 위한 이중문 미설치 40% 등), 휴식공간 부족, 물 제공 미흡 등
- 온라인 광고 시 영업 정보(허가번호, 업소명, 주소 등) 제공의무 위반
 - 실태조사 결과, 온라인 광고 게시글의 98.8%가 정보제공 부실
 - * (실태조사, '23.5) 온라인 영업 시 판매업 허가번호 다수 미기재 및 잘못 기재, 허가번호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, 판매 동물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 등 미제공 등
- 시설·인력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
 - * (실태조사, '21.12) 영업자 실적보고서·거래현황·개체관리카드 미작성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 미흡, 교배·출산 사이 기간 미준수, 설치류·해충 방지시설 설치 미흡 등

□ 영업제도 강화 등 업무 증가에 비해 현장 집행력이 부족

- 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 등으로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고, 신규제도* 도입으로 현장 집행력 부족 심화
 - * 수입·판매·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,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, 불법·편법 영업(무허가·무등록 영업) 처벌 강화에 따른 지자체 행정·점검 업무 추가 가중
- 행안부 기준인건비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,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관심 등에 따라 동물복지 인력 확보에 소홀한 경향
 - * 기준인건비에 동물복지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도 다른 업무로 인력을 배치
- 일선 담당자가 영업지도·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*를 병행
 - * ('22년 설문조사) 민원 대응, 동물보호센터 운영, 예산사업 등 업무를 병행, 가축 방역·축산업 인허가·축산물위생 등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상당수

참고3

반려동물 영업 관련 주요 문제 사례

①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지는 반려동물(모견 등)을 확대시켜 폐사

- * (경기 양평) 동물번식·판매업자가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을 마리당 1만 원에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시킴('23.4월 다수 언론 보도)

② 열악한 사육장*에서 공장식 생산으로 모견 확대 및 폐사

- * 운영자 1인(61%)이 330㎡(100평) 미만 영업장(77%)에서 48마리의 부모견을 사육하여 연 63마리의 강아지를 생산·판매(생산업 실태조사, '21.12)

- ▶ 죽은 새끼 옆 어미...지하 방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 후 판매 (YTN, '21.3.25)
- ▶ 탈장된 채 비틀...'합법 번식장'서 출산 기계로 죽어간 개들 (한겨레, '22.12.10.)

③ '보호비' 명목 고액 파양비 수령 후, 즉시 재분양 또는 불법 유기·폐기

- 경기 광주에서 무등록 '펫숍'에서 동물방치 및 확대·폐사(JTBC)
- 경기 여주에서 '신종펫숍' 불법 유기·폐기(개 사체 119구) 보도('23.4)

④ 유기동물 '보호소'를 표방하며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가의 품종견 구매 유도, 반려동물용품·병원·보험 끼워팔기 사례 등 피해 발생

- ▶ '신종 펫숍'은 어떻게 파양견 팔아 돈을 벌었나 (한겨레, '20.6.5)
- ▶ '안락사 없는 보호소' 가면 쓴채...파양견 두 번 올리는 신종 펫숍 (한국일보, '23.5.4)

⑤ SNS 등 활용, 개인 간 분양으로 위장한 음성적 동물판매* 성행

- 회원 수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카페, 일일 게시글 100건 이상인 SNS 등을 통해 개인 간 유·무상 분양 성행으로 피해* 발생
- * 유기동물 판매, 동물등록 미신청, 매매 계약서 미제공, 백신접종 및 질병 여부 등 동물 건강 상태 파악 불가로 소비자 피해, 서울시 등 지자체로 다수민원 접수
- 불법 생산·판매업자들의 음성적 동물판매* 등 악용 문제 있으나, 개인 거래에 대한 관리 수단 부재로 단속·적발 어려움

⑥ 불법 동물 카페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및 확대 발생

- * 전시동물을 망치로 때려 폐사, 전시동물 다수 질병 감염 보도(SBS, '22.11.27)
- 서울 소재 동물전시업 조사 결과 정식 등록은 4개소뿐, 전시 동물 감염병 보유·사육조건 열악(서울시, '22.12)

Ⅲ. 해외 사례 및 시사점

1 반려동물 영업 해외 사례

□ (인허가)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, 일부 갱신제 운영

- 대부분 선진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·고양이 등을 번식 또는 판매하려면 사육시설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할 필요
- 관리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며, 갱신제를 통해 지속 감독

- ▶ (영국) 시설 등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, 갱신제 운영(1년)
- ▶ (미국) 영업면허를 동물번식업자(ClassA), 동물판매·이송·경매업자(ClassB), 동물 전시·공연업자(ClassC)로 구분하여 발급하고, 3년마다 갱신
- ▶ (일본) 판매·보관·임대·훈련·전시 등 동물을 취급업자를 제1종(영리)과 제2종(비영리)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

□ (생산) 주요국가에서 동물번식업의 경우 동물등록, 근친교배 금지

- 동물을 번식하여 판매할 경우, 부모견 등 동물을 등록*하도록 함
 - * 지역 동물보호센터, 지자체 및 The Kennel Club, ANKC 등 관련 민간협회에 등록
- ▶ (영국) Microchipping of dogs (England) Regulations 2015
- ▶ (독일) Hundeverordnung(HundeV), Hunderegister
- ▶ (호주) Dogs and Cat management Regulations 2017
- ▶ (일본) 동물애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
-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인 근친교배*를 통한 단두종(Flat Faced Dog) 번식을 학대로 판단하거나 금지
 - * 호흡곤란, 높은 안압 등 유전적 질환 우려
- ▶ (네덜란드) 퍼그, 불독, 복서 등 20개 품종의 단두종 개의 교배를 금지하나, 체력·건강검사를 통과한 개는 예외적으로 브리딩 허가(2019)
- ▶ (노르웨이) 불독과 '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얼'(단두종)의 교배를 동물학대로 판결

□ (판매·광고) 펫숍·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·홍보 제한 경향

-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펫숍,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브리더를 통한 직접 분양만 가능토록 규제 강화 추세
 - ▶ (벨기에·핀란드·독일) 펫숍 등에서 판매 금지,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
 - ▶ (영국) 6개월 미만 개·고양이 펫숍·온라인 판매 금지 및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
- 영국, 독일 등 주요 국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경매를 금지
 - * (경매 불가능) 영국, 독일, 네덜란드, 이탈리아 등
- 덴마크, 캐나다, 일본 등에서는 생산업-경매장-펫숍 방식으로 동물 경매가 가능, 다만 동물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*
 - *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및 영양 관리, 광고·판매 시 동물 건강 등 명확한 정보 제공 의무, 위반 시 벌금, 영업정지, 허가·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
- 미국의 경우 온라인 광고 사기* 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홈페이지 운영, 온라인 동물판매 사기 예방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
 - * 지리적 이유로 온라인 판매 가능, 이를 이용한 온라인 판매사기가 성행
온라인 사기 신고 : <https://petscams.com/>, [https://www.ic3.gov/\(FBI\)](https://www.ic3.gov/(FBI))

□ (변칙영업)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보호시설이 구분되어 있음

- 독일, 미국, 영국의 경우 영리 목적의 보호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
- 민간보호시설은 기부금을 받고, 파양동물 수용 후 재입양 등 추진
 - 독일의 경우 도시별로 동물보호단체가 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, 미국, 영국의 경우 동물보호단체 소속의 보호소에서 수용

<반려동물 영업관련 선진국과 우리나라 주요 제도 비교>

구분	주요 선진국 동향	우리나라
관리 체계	▶ 영리/비영리, 관리 필요성(번식~전사)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, 갱신제 (영국 1년, 미국 3년, 일본 5년)로 운영	▶ 영업 8종 ▶ 갱신제 미도입
판매 제한	▶ 영업허가 규정 → 펫숍온라인 판매 제한 → 근친교배 제한 (미국 일부 주) (영국·독일·벨기에) (네덜란드·노르웨이)	▶ 판매제한 없음
동물 파양	▶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보호소 없음 ▶ 동물보호단체 운영 민간보호소 에서 기부금을 받고 수용	▶ 영리목적 변칙영업 ▶ 민간보호소 파양 미수용

2 시사점

□ 반려동물 생산단계 동물등록을 추진, 불법 생산·유기 방지 필요

- '23.4월부터 생산·수입·판매업에 거래내역 신고제*가 도입되었으나, 개체별 관리체계 미비로 무허가 번식장 등 불법 행위 지속

* 매월 관할 지자체에 동물의 거래내역을 신고(법 제80조, 시행규칙 제50조)
미신고 시 시정명령 조치(법 제86조제7항) → 미시정 시 과태료 100만원

※ 모견 개체별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자견 등 정확한 출처 확인 곤란

- ▶ (경기 김포, '23.3)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모견 등 사육 적발
- ▶ (전북 진안, '23.5) 비송 100마리 사육 무허가 영업장 적발

- 특히 생산업의 부모견은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, 관리에 사각
- 공장식 번식, 유기·폐기 거래, 출산 휴식기 미준수 등 음성적 불법* 성행

* 경기 양평군에서 개 약 1,200 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례 등

- 개체 단위로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 이력을 관리하고, 향후 동물 등록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

* 반려동물 생산 이력제 필요 : 85.2%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
□ 판매 등 영업장과 보호시설의 역할·장소 분리 등 제도개선 필요

- '보호소' 명칭을 사용하면서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혼돈 야기

- ▶ '안락사 없는 보호소', '요양보호소', '동물쉼터'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'민간동물보호시설'로 혼동
- ▶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(파양동물)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는 '변칙영업'이 성행, 언론 등에서 "신종펫숍"이라 명칭

- 변칙영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*을 보완, 소비자 피해방지 필요

* 동물보호법 상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모호하여 영리행위 제한 근거 부족, 민간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 등 영업·비영업 간 분리 규정 명확화 필요

□ 동물복지를 고려한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 구조 개편 필요

-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,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의 공급구조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지속 발생

- ▶ 번식·경매장에서 개 1,200 마리를 만 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·아사 보도(양평, '23.3)
- ▶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모견 등의 불법 사육하는 현장 적발(김포, '23.3)
- ▶ '보호소'를 사칭한 번식영업 펫숍의 '파양동물 암매장' 사건 보도(여주, '23.5)

- 독일의 경우 성행하는 반려동물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, 범죄는 엄격히 처벌

- ▶ 파보바이러스 감염 2개월 미만 강아지 온라인 판매 후 폐사(징역 3년, '21.)
- ▶ 강아지 19마리를 밀수하여 온라인 판매 후 폐사(징역 3년, '22.)
- ▶ 온라인에 순수품종, 예방법종 완료 등 허위 광고(징역 2년 4개월, '23.)

- 외국 사례와 같이 면허 갱신, 브리더 중심 공급 등을 검토하고, 허위 반려동물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

□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점검, 인식개선 등 교육 강화 필요

-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영업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, 동물 유기·학대 및 불법·편법 영업에 대한 우려도 증가

- 우려를 불식시키고,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영업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영업장 점검·제도 필요

- 영업관리 집행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* 개편 필요

* 동물등록제 개편,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위법 요소 사전 차단 및 발굴

- 동물복지 개념의 반려동물 입양·양육 문화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* 제도화 및 보호소 동물 입양 수용성 개선 필요

* 미국 일부 주, 영국, 캐나다, 호주 등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 전에 반려동물의 적절한 돌봄, 건강, 훈련, 사회화, 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

- 예비 반려인 동물 입양 교육 및 반려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

IV. 개선방향 및 전략

비전

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

달성 목표

- ◇ 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: (도입) '24. → (등록완료) '26.
- ◇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: (시범) '24. → (구축·운영) '26.
- ◇ 변칙영업 규제 마련 및 이행, 전시업 허가제 전환('24)

전략 및 과제

4대 전략

세부 추진 과제

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



- ①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- ② 생산-판매-양육 쏠단계 이력관리 추진
- ③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
- ④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로 전환 검토(중장기)
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



- ①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- ② 보호시설 영리 행위 금지 명확화
- ③ 민간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

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

- ① 노화·질병 동물 유기 등 처벌 강화
- ②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- ③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



- ① 중앙·지자체·단체 합동점검 강화
- ②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- ③ 파양 상담 및 입양 전 교육 강화

[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]

	현재	미래 모습
번식 (생산)	· 생산업 부모견 미등록 · 생산업 모견 숫자 파악 불가 ·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곤란	·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 · 생산업 전체 모견 숫자 파악 · 모견 출산 휴식기, 노화 동물 학대 확인·적발 가능
판매 (경매)	· 영업·비영업 공간 불명확 · 무허가 생산업 경매 확인 곤란 · 건강 등 정보 제공 미흡 · 번식-경매-펫숍 판매 구조	· 영업·비영업 공간 구분 ·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 차단 · 건강상태 등 정보 제공 강화 ·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 검토(중장기)
전시	· 동물전시업 등록제 · 동물 관리기준 불명확	· 동물전시업 허가제 전환 · 전시동물 관리기준 마련
분양 (구입)	· 반려인이 조건없이 구입 * 높은 파양 수요(약 22%) · 불법 가정 분양 방치	·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* 반려동물 에티켓, 행동지도 등 ·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 → 불법 가정분양 퇴출
파양	·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소 (파양비 지급후 파양) · 일부 동물 유기	· 보호소 영업행위 금지 · 민간동물보호 시설 파양 수용 * 파양 기부금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· 불가피한 사유 지자체 인수 * 장기요양, 군복무, 재해 등
이력 관리	· 총량단위 관리 *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· 불법 거래 확인 곤란	· 개체단위 이력 관리 * 모견 등록번호 + 자견 개체번호 연결 →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* 「생산 - 판매 - 양육사망」 이력 관리 · 무허가공장식 번식업 관리·퇴출

V. 세부 추진 계획

1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

①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
- (등록제 제도화) 동물생산업 모견·종견 등록제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
 - 「동물보호법」 상 '등록대상 동물의 범위'에 동물생산업의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 번식시킬 목적의 개를 포함* 시행령
 - * 생산자단체·동물단체 등 3차례 간담회 시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육 중인 부모견의 동물등록 도입 필요 의견 제시
 - ** (현행)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+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
 -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 현황 파악 및 개체 단위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*
 - * 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을 토대로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 준수, 개·고양이 2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및 12개월 미만 교배·출산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
 - (단계적 도입) 사육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점검 후 제도 시행·정착
 - 모견·종견 등 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('23.下)
 - * 동물생산업·소규모동물생산업 동물 사육환경 및 현황, 모견·종견 사육 두수, 개체 관리카드 작성·관리 현황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현황 등
 -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을 개정, 생산업 동물등록제 의무화('24.~)
 - * (일정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('23.9월), 입법 예고('23.10~11월), 규제심사('23.12월), 법제처 법제심사('23.12~'24.1월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확정('24.1월)
 - 다만, 2년간 생산업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, '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완료
- ※ '번식 목적의 개' 등록을 우선 추진, '번식 목적의 고양이' 적용 여부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

2 생산-판매-양육 소단계 이력 관리 추진

□ (도입체계) 모건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연결, 이력관리 추진

- (생산) 생산업에서 등록된 모건별로 자견개체번호를 부여하고, 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*

*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- (모건) 동물등록번호 - (자견) 개체번호

- 거래내역 신고(매월)와 연계하여 자견 개체번호 신고

- (판매) 동물 경매 시에도 자견 개체번호를 식별 코드로 부여하고, 펫숍 판매 시 자견 동물등록* 후 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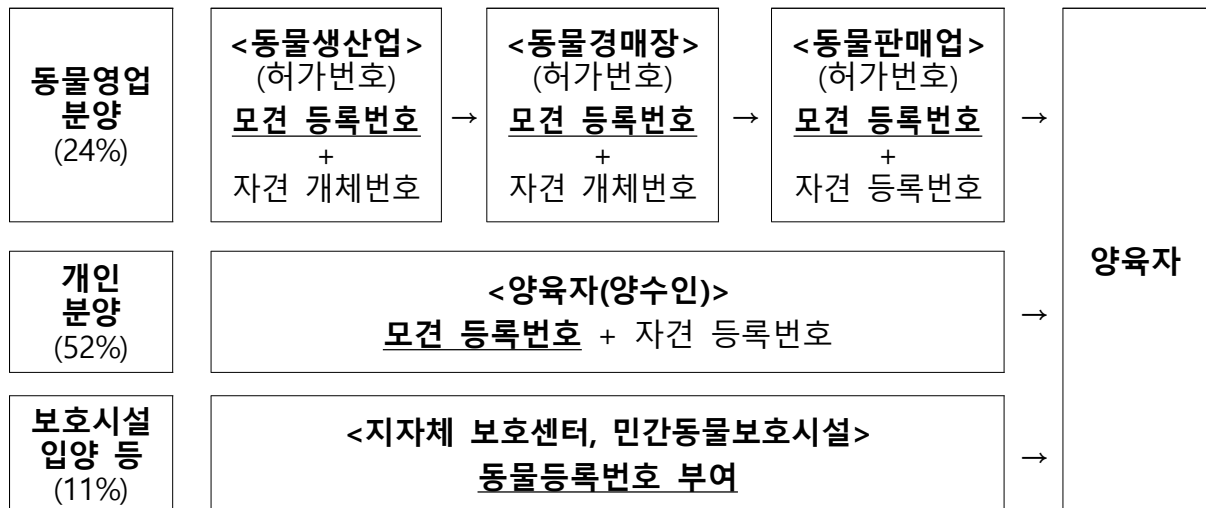
*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- (모건) 동물등록번호 - (자견) 동물등록 후 판매
자견 동물등록 시에는 모건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력 관리

- (개인 분양) 반려동물(자견) 등록 시 모건 등록번호를 연계·등록

* (모건) 등록번호 - (자견) 등록번호, 양수인이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

※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 등 필요 시 별도 등록번호 체계 부여

< (예시) 반려동물 이력관리 도입체계 >



□ (도입방안) 이력관리 기반 확충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 추진

- 반려동물 이력관리 방안* 연구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검토(‘23.下)

*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(자견과 모건 번호 연결, 암수 구분 등) 및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등 영업자 신고자료를 활용한 이력관리 방안 검토

-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보호단체·영업자 의견수렴(토론회 등)을 거쳐 도입방안 마련(‘24.上) 및 기능개선, 시스템 구축 추진(‘25~)

참고4

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개선(안)

	현재	개선
생산	▶ 생산업 허가(총량관리)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면제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 개체번호 부여 ▶ 개인 분양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	▶ 생산업 허가(총량+개체관리)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 개체번호 부여 (모견·자견 번호 연결) ▶ 개인 분양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
판매 (경매)	▶ 수입·판매업 허가(총량관리) - 동물등록(반려견) 후 판매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개체번호 관리	▶ 수입·판매업 허가(총량+개체관리) - 동물등록(반려견) 후 판매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개체번호 관리 (모견·자견 번호 연결)
양육·사후	▶ 장묘업 허가 - 동물등록 말소(대행 불가) ▶ 운송·미용·위탁업 등록 - 등록한 동물 서비스 ▶ 개인가정 양육 - 동물등록 의무(반려견)	▶ 장묘업 허가 - 동물등록 말소(대행 허용) ▶ 운송·미용·위탁업 등록 - 등록한 동물 서비스 ▶ 개인가정 양육 - 동물등록 의무(반려견) (모견·자견 등록번호 연결)

3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

□ (온라인 광고 등 규제) 전자상거래법 규정 준용 및 허위매물 광고 규제

-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광고·영업 시, 「전자상거래법」 관련 규정*을 준수하도록 하여 과대광고 행위를 제한하고, 대면판매 명확화(24.) 시행규칙
- *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, 「중요한 표시·광고 사항 고시», 「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」 등 표시·광고 관련 규정 준수 등
- 특히, 다른 법령의 표시·광고행위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, 허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반려인을 유인하는 행위 규제

※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 규제 사례

- ▶ 「전자상거래법」 제21조(금지행위)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
→ 제40조(벌칙)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징역 3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▶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(자동차관리사업자 금지행위) 존재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 및 사실과 다른 거짓 표시·광고 행위 금지
→ 제80조(벌칙)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□ (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) 신뢰할 수 있는 동물 건강 정보 제공 의무화

- 계약서와 함께 소비자 필수 정보 제공 항목으로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가 작성한 예방접종 및 건강 확인서 등 증빙 제공(24.) 시행규칙
- 동물의 건강관리 및 번식·반입·반출 자료 등 영업 관련 실적* 증빙자료에 대한 거짓·허위 기재·제출** 금지 시행규칙

* 예방접종 증명, 거래내역 신고서, 개체 관리카드, 영업실적 보고서 등

** 현행 규정에는 영업실적 증빙자료의 거짓·허위 기재·제출 시 제재 조항 부재

□ (온라인 모니터링) 온라인 광고를 정기 모니터링하고, 행정지도 강화

- 민간단체, 시민 제보 접수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정기(반기 1회) 모니터링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(23.下)

4 브리더 중심의 생산-판매 전환 검토(중장기)

□ (사례조사) 영국·독일 등 선진 해외사례 조사 분석

- 펫숍·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영국 등 사례, 경매를 허용하는 스페인·일본 등 사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('23.下)

* 면허 갱신, 브리더 중심 공급, 동물 경매 등 해외 사례 조사 및 펫숍 등 제3자판매 금지(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), 일정 기간(ex. 6개월령) 이상 개체만 분양 등 개선방안 검토

<선진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려동물 생산·판매제도 비교 검토>

구분	주요 선진국	우리나라
생산	▶ (영국·미국·일본) 면허제 및 갱신제 운영(각각 1년, 3년, 5년) ▶ (네덜란드·노르웨이) 근친교배 금지	▶ 동물생산업 허가제(갱신제 미도입) ▶ 근친교배 제한하지 않음
경매	▶ (영국·독일·네덜란드) 경매 불가능 ▶ (스페인·일본) 경매 가능, 동물 보호·관리 규정 엄격	▶ 경매 가능 ▶ 번식장-경매장-판매장 식 반려동물 공급구조
판매	▶ (영국·미국·일본) 입양센터 또는 허가받은 정식 브리더 직접판매	▶ 펫숍을 통한 판매 가능, 판매방식 규제 없음
온라인 광고	▶ (영국·독일·일본) 정식 등록된 전문 브리더가 직접·대면 판매할 경우 온라인 광고 가능	▶ 허가 영업자가 대면 판매할 경우 온라인 광고 가능하나, 건강정보 등 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

□ (의견수렴) '브리더 중심 생산-판매' 중장기적 전환 검토 및 공론화

- 해외사례 조사 및 「동물복지법 체계 개편방안」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, 중장기적 전환 방향성 검토

* 동물복지 「법체계 개편방안」 연구용역(~'23.12)

- 「동물복지법」 제정과 연계, 공론화 및 제도화 검토('24.~)

- 법령 제·개정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및 강화하는 제도 내용의 경우 「동물복지법」 제정과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검토

2

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

1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
□ (공간 분리) 반려동물 영업장과 동물보호시설 공간의 명확히 분리

- 영업자 준수사항(시설기준)에 다른 용도의 시설 간 '분리'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시행규칙

* 허가·등록 영업 시설 공통기준 : (현행) 벽이나 층 등으로 나뉘어진 경우
→ (개선) 연결된 출입구가 없고, 시야가 차단된 벽이나 층으로 구분

- 보호시설로 위장하여 영업행위시(예. 반려동물판매) 처벌* 법

* 영업자 시설·인력 기준 미준수시 처벌(과태료 500만원) 수준으로 검토

2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

□ (비영리) 영리 목적 보호시설 운영을 제한, 비영리성을 명확히 규정

-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 동물보호시설*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·홍보를 제한 법

* 「동물보호법」 제37조제1항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

- 민간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며 유사 영리 시설을 운영·홍보할 수 없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비영리성을 명확하게 규정*

* (예시)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 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·홍보 금지

- 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·홍보 시 무등록 민간동물 보호시설 운영과 동등한 수준*의 별칙조항 마련

* 「동물보호법」 제97조(벌칙)4항제2호 무등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시 벌금 5백만원

-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안 발의 등 추진(23.下)

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

□ (파양동물 수용) 선진국처럼 파양동물을 민간단체서 수용 검토

- 반려인의 파양 관심(반려인의 약 22%)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선진국처럼 민간보호소에서 일정 조건* 하에 수용 방안 검토

* 파양 절차·방식 등에 대한 민간보호단체 간 합의된 기준 등

※ 해외 선진국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

- ▶ (미국·영국·독일)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없음
- ▶ (기부금)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기부금을 받고 파양동물을 수용 후 재입양
- ▶ (민간단체)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 또는 소속 단체가 직접 보호시설을 운영

<선진국 민간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비용> * '23.05 기준

국가	업체 및 도시	개	고양이
미국	Animal Humane Society	\$55(73,700원)	\$55(73,700원)
	SPCA 캘리포니아	\$60(80,400원)	\$40(53,600원)
	SPCA 플로리다	\$250(335,000원)	\$210(281,400원)
	SPCA 새크라멘토	\$75(100,500원)	\$30(40,200원)
영국	Battersea Dogs & Cats home	£50(83,445원)	£50(83,445원)
	All Dogs Matter	£20(33,378원)	-
독일	뮌헨	110€(162,470원)	60€(88,620원)
	브레멘	140€(206,780원)	100€(147,700원)
	라이프찌히	180€(265,860원)	90€(132,930원)
	보훔	250€(369,250원)	100€(147,700원)
	함부르크	250€(369,250원)	150€(221,550원)

□ (공론화·제도화)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공론화 및 제도화

- 파양동물 수용 등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해외사례* 조사('23.下)

* 민간동물보호시설 파양동물 수용, 기부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운영 사례 조사

- 파양 수용 시 기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* 마련('24.~) 시행규칙

*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시 기부금·후원금 처리 및 회계 내역 공개 등

3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1 노화·질병 동물관리 및 학대 처벌 강화

□ (수의사 진단) 질병·상해 동물 등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

- 동물생산업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질병·상해 시 수의사 검진 및 내역기록·관리 의무화*('24) 시행규칙

* (예시) 질병·상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검진 후 그 검진 내역을 기재하고, 회복 불가 등 수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을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

**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 노령·은퇴견에 대한 보호·관리 방안 검토 병행

□ (학대 처벌 강화) 노화·질병 동물을 학대 시 처벌을 강화

- 현행 노화·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시 처벌 규정을 인도적 처리 위반 수준(제46조제2항 위반, 벌금 3백만원)으로 강화('24) 법

* (현행) 과태료 3백만원(영업정지 3개월) → (개정) 벌금 3백만원(영업허가 취소)

2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
□ (대상업종) 동물생산업 및 동물전시업 등 CCTV 설치 대상업 포함

- 생산(사육실, 분만실 및 격리실)·수입(사육실, 격리실)·동물전시업(전시실, 휴식실)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('24) 시행령

* (현행) 판매·장묘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5종 → (개정) 생산·수입·전시업 등 3종 추가

- CCTV를 활용하여 영업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및 동물 학대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·보존

3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□ (전시업 허가제)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, 허가 심사 강화

-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·인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·시설조사 및 검토 강화 법

-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안 발의 추진('23.下)

□ (관리기준 마련) 동물전시업 사육 동물 관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

- 전시업 사육 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「동물전시업 등 사육 동물 관리기준」 연구용역('24.上), 기준마련 등 제도화 검토('24.下) 시행규칙

* 간식 제한, 시설분리, 자연채광, 바닥재 기준, 중성화 의무 등 검토, 수용 동물 수 및 반려동물 외 다른 동물의 전시·사육 제한, 교육·실습 동물 관리기준 검토 병행

4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

1 중앙·지자체·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

□ (상시 점검) 「합동·기획」 점검체계를 상시화, 불법·편법영업 행위 근절

- 금년 새롭게 개편된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보완·강화하고('23.下), 상시 점검 체계 구축('24.~)

< 개편된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 >

구분		내용	주체	시기
합동 점검	상반기	- 생산·판매·전시업 등 동물복지 민감 업종 집중 점검	정부·지자체	상·하반기 (각 1회)
	하반기	- '23.4월부터 강화되는 준수사항* 이행점검 *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제 전환, CCTV 설치 강화, 거래내역 신고제 등		
기획점검 (현장전문가 협조협업)		- 반려동물 불법·편법영업 심층 점검 - 온라인 광고 등 문제영업에 대해 중앙·민간 경찰(특사경) 공동 원포인트 조사·단속	정부·지자체	수시
기본 점검	상반기	- 자율 점검계획 수립, 영업자 전수 점검	지자체 (시·군·구)	연중 (1회 이상)
	하반기	- 전년도 점검 결과를 기초로 영업자 현행화 - 기본점검 시 의무교육 이수 독려·홍보 병행		

- 영업 허가·등록 시 시설·인력 기준 등 중요 점검 사항에 대한 해설서, 모범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질적 단속 추진

* 생산업 단체 간담회 의견 : 지자체 공무원이 허가기준·절차 등을 잘 몰라 제대로 된 점검·단속이 안된다는 지적 많음

□ **(협업 강화) 지자체 영업장 점검·관리 관련 집행력 제고 추진**

- 지자체 동물복지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 노력 지속
- '23년 행안부의 지자체 배포자료(인력 재배치 관련 국가정책수요)에 '동물복지인력 확충' 포함('22.11. 기초치) 및 지자체 독려

※ 부여군 : 동물보호팀(총 4명)

- '20년 축산과 신설시 과 내에 '동물보호팀'도 함께 신설하여 전담부서 운영
- 팀장급 등에서 의지를 갖고 공무원 등 인원 확보 노력 지속 추진 중

- 「동물보호법」에 지자체장의 적정인력 확보 책무 명시 등 검토

* (예) 관내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에 비례한 인력 확보 등(동물복지법과 연계)

< 유사 입법례 : 가축전염병 예방법 >

법 제7조(가축방역관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시행령 별표 1(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)

(예) 기초지자체는 관할 내 축산농가수 기준 300호 미만은 1명, 300~600호는 1.5명, 600~900호는 2명, 900~1200호는 2.5명, 1,200호 이상은 3명 이상 확보

- 동물보호관(지자체 담당자)과 명예동물보호관(동물보호단체 등)* 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등 협조·협력 확대 및 포상 강화('24.)
- 동물보호관 관리하에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확대 검토(법령 개정 등)
- 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계도·홍보 → (개선안) 영업자 공동 점검 등
(사례)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사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, 피학대동물 진단·치료 등 실시
- 일선 공무원·현장 전문가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*
- * (현재) 표창(장관 표창) → (개선안)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 및 포상(격려금 등) 검토

②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
□ (교육 확대)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강화

- 동물장묘업 등 신규 추가된 의무교육자 교육과정 개설('23.下)
- 지자체 등 주관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정 발굴 및 해당 교육 이수 시 영업자 의무교육 인정* 검토('24.~)

*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주관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일정 시간 인정 등

□ (현장 교육) IT기기 활용이 어려운 영업자 등 대상 수요기반 현장 교육

- 고령 영업자 대상 교육, 업종별 교육 등 수요기반 현장교육 추진
- 온라인 강의 병행 및 교육 강사 Pool 구성 및 다양화('24.~)

* 애견협회, 애견연맹, 영업자 협회 등을 통한 교육 수요 조사

③ 파양상담 및 입양전 교육 강화

□ (파양상담)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 검토

- 선진국의 파양동물 수용 시 파양상담 채널 및 사례 조사('23.下)
-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(동물보호센터)-민간동물보호소 소개* 등 파양상담 채널 마련 검토('24.)

*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였으나 미승인 시 민간동물보호소 소개·알선 등

□ (입양 전 교육)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 대상 입양 전 교육 강화

- 예비 반려인 동물 입양 교육 및 반려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('24.)
 -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예비 반려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
 - 예비 반려인 자녀 대상 펫티켓 등 시·도 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홍보
- 예비 반려인 등 대상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* 검토 병행('24.)

*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해외 사례 검토

VI. 향후 일정

- 의견수렴, 연구,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과제별 추진방식 구체화
 - 개별 과제의 현장 수용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, 반려동물 영업 업체,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화
 - 추가 조사 및 논의 필요과제는 연구용역·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

< 「반려동물 영업 강화 방안」 세부과제별(총 24개) 분류(안) >

구분	수단별 분류	신규(14개), 강화(10개)
제도개선 과제	「동물보호법령」 개정 14개	신규 7개, 보완·강화 7개
	가이드·지침 마련 등 1개	보완·강화 1개
예산사업 과제	사업지원, 교육·홍보 등 3개	신규 1개, 보완·강화 2개
연구·검토 과제	연구용역·실태조사 등 6개	신규 6개

- 동물보호법 개정 및 중장기 제도 개편 연구 등 추진
 - 연내 「동물보호법」 개정(안) 발의 등 원포인트 개정 추진('23.下)
 - 영리 목적 보호시설 운영 제한, 전시업 허가제 전환 등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
 -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등 개정('23.下~'24.)
 - 부모견 등록 의무화, 영업 시설·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
 - * (일정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('23.9월), 입법 예고('23.10~11월), 규제심사('23.12월), 법제처 법제심사('23.12~'24.1월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확정('24.1월)
 - 「동물복지법」 체계 개편과 연계, 공론화 및 제도화 검토('24.~)
 - 브리더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개편 등
- 예산 수반 사업*의 경우, '24년 시범사업 및 '25년 농식품 예산(안)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

* 동물보호정보시스템(APMS) 개선,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구축 ISP 등

참고5

세부과제별 추진일정(안)

추진과제	일정	비고
전략 1 :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		
①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		
○ 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의무화 신규 시행령	'24~	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② 생산-판매-양육 전단계 이력 관리 추진		
○ 「반려동물 이력관리 방안」 연구용역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도입방안 마련 및 기능개선, 시스템 구축(ISP) 추진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검역본부
③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		
○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④ 브리더 중심의 생산-판매 전환 검토(중장기)		
○ 반려동물 생산-판매 유통 체계 해외사례 조사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동물복지 「법체계 개편방안」 연구용역 신규 계속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전략 2 :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		
①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②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 신규 법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③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		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해외사례 조사 신규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기준 개선 신규 시행규칙	'24~	동물복지정책과

추진과제	일정	비고
전략 3 :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		
① 노화·질병 동물 학대 등 처벌 강화		
○ 질병·상해 동물 건강관리 강화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노화·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 신규 법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②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 강화 시행령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③ 전시업 허가제 전환, 관리기준 명확화		
○ 전시업 허가제 전환 신규 법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전시업 사육 동물 관리기준 마련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전략 4 : 불법영업 집중 단속, 교육·상담 강화		
①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		
○ 영업자 합동·기획 점검체계 상시화 강화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지자체 집행력 제고 및 포상 강화 강화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②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확대		
○ 영업자 의무교육 콘텐츠 확대 강화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○ 영업자 수요기반 현장 교육 추진 강화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③ 파양동물 상담 및 입양 전 교육 강화		
○ 파양 상담 체계 마련 검토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
○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강화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